

『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정근수 의원 외 7명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 및 읍·면·동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지정 요구를 반영하여 생활환경 보전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읍·면·동 축종별 제한구역을 변경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 지정(안 별표 1)
 - 고아읍 7개리(신촌리, 횡산리, 내예리, 외예리, 황산리, 예강리, 향곡리) 추가 지정
- 상위 법령인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맞게 읍·면지역에서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가축의 마릿수를 변경(안 제3조)
 - 소 : 10마리 이하 → 8마리 이하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
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읍·면 지역의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가축의
마릿수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구역
확대지정에 대한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인근 주민들의 정주여건을
보호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
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